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3. 6. 22.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2022년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은 2023. 5. 30.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 6. 1. 행정자치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총괄

- 행정국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남북교류협력 기금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2022 행정국 소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225	△236	15,171	15,407	4,988
대외협력기금(국내)	4,223	△509	1,104	1,613	3,714
남북교류협력기금	31,699	293	1,271	977	31,992

나.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2021년 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액은 52억 2천 5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51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154억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억 8천 8백만원임.
- 사용액 154억 7백만원은 융자성 사업에 154억 5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다.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2021년 말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액은 42억 2천 3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1억 4백만원, 사용액은 16억 1천 3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7억 1천 4백만원임.
- 사용액 16억 1천 3백만원은 비융자성 사업에 16억 1천 2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을 집행하였음.

라. 남북교류협력기금

- 2021년 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316억 9천 9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2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9억 7천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9천 2백만원임.
- 사용액 9억 7천 7백만원은 비융자성 사업에 9억 2천 9백만원, 기본경비 4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음.

4. 검토 의견

공무원주거안정기금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기금개요

- 기금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 기금분류 : 융자성(목적상), 공무원복지(성질상), 직접관리(관리방식)
- 기금용도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및 기타 주거안정 사업
- 조성재원 :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이자수입 등
- 설치년도 : 2021년

운용계획

재원구성	수입계획	▶ 융자금 회수금 ▶ 일반회계 전입금 ▶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등
	지출계획	▶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 기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 운용 경비
운용규모		▶ 사업비 기준 연간 약 180억원*(±α) 규모 운용 - 사업비 규모는 최근 2년간('18~'19) 전세자금 지원금 신청수요(평균 194억), 전세가 상향 추세, 1인당 개인한도 현실화(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0억원으로 하되, - 일반회계 재원부담 최소화를 위해 연차별로 확대('21년 130억, '22년 155억, '23년 이후 180억) ※ 연간 운용규모는 신청수요, 당해연도 상환금 수입규모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년 탄력적으로 조정(±α)
조성목표		▶ 750억원 ('21년~'26년) ※ 기용자 회수금 266억,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 이자수입 23억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시 재정예의 영향		▶ 기존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비를 기금으로 편성(전출), 융자성 사업으로 재원이 소멸되지 않음 → 재원변경만 있을 뿐 시 재정규모 변동은 없음 ▶ 상환되는 융자금을 당해연도에 즉시 사용 가능 → 재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행정국은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주거안정 사업의 규모 확대 및 기금설치에 대한 직원들의 개선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에 조례(「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를 제출하였고, 의회 의결('20.9.3)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산(일반회계)와 기금의 비교]

구분	일반회계	기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필요시
예산확정	▪ 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 지방의회 심의·의결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조정 → 지방의회 심의·의결
집행절차	▪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합목적성 차원의 자율성·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u>주요항목(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u>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상환금,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등을 통해 조성되며, 전세자금(융자금액 최대 1억원)을 신청한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연도별 전세자금 예산,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예산	집행률	신청현황		선정인원	지원현황		경쟁률 (신청인원/ 선정인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6년	3,800	100%	129	7,474	70	68	3,800	1.8:1
2017년	3,800	100%	85	5,048	69	69	3,800	1.2:1
2018년	5,800	86.7%	226	8,152	82	73	5,032	2.8:1
2019년	6,800	100%	261	20,196	86	87	6,800	3.0:1
2020년	13,000	91.7%	305	23,086	179	172	11,919	1.7:1
2021년	13,000	89.1%	255	17,782	200	175	11,584	1.3:1
2022년	15,500	99.4%	320	27,030	183	181	15,405	1.7:1

- 2021년 말 서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액은 52억 2천 5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51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154억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억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 6백만원 감소함.

<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5,225	△236	15,171	15,407	4,988

- 2022년도 서울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수입액은 203억 9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도 203억 9천 5백만원임.

< 기금 운용 총괄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이 월 액 (A)	수 입 액 (B)	지 출 액 (C)	다 음 연 도 이 월 액 (D)	비 고
-	20,395	20,395	-	A+B=C+D

-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기금 수입결산

- 2022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92억원, 용자금 회수 58억 2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52억 2천 5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천 9백만원으로 총 203억 9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¹⁾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2 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실제 수납액 (E)	수납률 (E / C)
		당초	수정 (A)					
계		19,262	22,206	-	22,206	20,395	20,395	91.8
전입금		9,200	9,200	-	9,200	9,200	9,200	100.0
용자금회수(이자포함)		7,741	7,740	-	7,740	5,821	5,821	75.2
예치금회수		2,280	5,225	-	5,225	5,225	5,225	100.0
이자수입		41	41	-	41	149	149	363.4

- 다만, 용자금 회수의 경우, 수입계획(77억 4천만원) 대비 19억 1천 8백만원 감소한 58억 2천 2백만원을 수납하여 수납률(75.2%)이 저조한 바, 용자금 적기 회수를 위한 행정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다. 기금 지출결산

- 지출결산의 경우, 융자성사업비 154억 5백만원, 예치금 49억 8천 8백만원을 포함한 총 203억 9천 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융자성사업비는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5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²⁾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2022 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	수정 (A)					
계	19,262	22,206	-	22,206	20,395	-	1,811
융자성 사업비	15,500	15,500	-	15,500	15,405	-	95
예치금	3,755	6,699	-	6,699	4,988	-	1,711
기본경비	7	7	-	7	2	-	5

< 2022년도 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계	15,500	15,405	99.4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15,500	15,405	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 총 181명, 15,405백만원 지원

-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융자
 2.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예치금 지출계획을 당초 37억 5천 5백만원에서 66억 9천 9백만원으로 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29억 4천 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17억 1천 1백만원(25.5%)의 예치금 감소가 발생한 바, 지출계획 수립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용자성 사업비	15,500	15,500	15,405	△95	- 선정자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기본 경비	7	7	2	△5	-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원회 참석심의 미개최(서면심의 대체 운영)
예치금	3,755	6,699	4,988	△1,711	- 용자 회수금 감소(용자기간 연장)로 인한 예치금 감소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동 기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액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29억 4천 4백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 수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전 입 금	9,200	9,200	-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7,740	7,740	-
예 치 금 회 수	2,280	5,225	2,944
이 자 수 입	41	41	-

< 지출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9,262	22,206	2,944
용 자 성 사 업 비	15,500	15,500	-
기 본 경 비	7	7	-
예 치 금	3,755	6,699	2,944

- 다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의 탄력성이 보장되지만,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정확한 수입·지출 추계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2022년 무주택 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지원대상 : 무주택 공무원(신혼부부 공무원, 신규 공무원 포함)
 - ※ 그룹별 선정 : 일반 40% 신규 20%, 신혼 30%, 다자녀(3자녀이상) 및 1인 가구 5%
- 선정시기 : 상·하반기 2회 (전세계약서 등 입증서류 확인 후 수시 지원)
- 지원금액 : 최고 1억원, 이자 연 1.0%(17. 7월~ / 보증보험 요율 0.32305%)
 - 전세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지원주택: 보증금 6.4억원 이하)
 - ※ 단, 세대원 4인 6.8억원, 5인 7.2억원, 6인 이상 7.6억원 이하
- 채권확보 : 보증보험가입 또는 채권양도 설정
 - ※ 채권양도는 SH 공사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설정 가능
- 지원기간 : 기본 2년(2회 연장가능, 최장 6년까지 지원)
- '22년 예산 : 15,500백만원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을 통해 조성되며,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및 재해에 대한 복구 등을 위해,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관할 자치구 제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1년 말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조성액은 42억 2천 3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1억 4백만원, 사용액은 16억 1천 3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7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9백만원 감소함.

< 2022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계정)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4,223	△509	1,104	1,613	3,714

- 2022년도 서울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수입액은 53억 2천 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 5천 3백만원임.

< 기금 운용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전 년 도 액 (A)	수 입 액 (B)	지 출 액 (C)	다 음 연 도 액 (D)	비 고
0	5,327	5,153	174	A+B=C+D

-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서울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기금 수입결산

- 2022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9천 8백만원, 예치금 회수 42억 2천 3백만원으로 총 53억 2천 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3)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2 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액 (B)	수 입 계 획 액 (C=A+B)	징 수 결 정 액 (D)	실 제 수 납 액 (E)	수 납 률 (E / C)
	당 초 (A)	수 정 (A)					
계	4,137	5,289	0	5,289	5,327	5,327	100.7
전 입 금	1,000	1,000	0	1,000	1,000	1,000	100

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예치금회수	3,077	4,223	0	4,223	4,223	4,223	100
이자수입	60	60	0	60	98	98	163
기타수입	0	6	0	6	6	6	100

- 다만, 기타수입(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반납)의 경우 당초 수입계획에는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계획수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입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 지출결산

- 지출결산의 경우, 비용자성사업비 16억 1천 2백만원, 예치금 35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 51억 5천 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자성사업비는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랜선 나눔 캠퍼스 등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제1항4) 각호에서 열거한 사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부족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과도하게 예치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동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31%에 불과한 바, 예치금 비중(68.7%)이 과다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 비중을 늘리기 위한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사고이월액 1억 7천 4백만원(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사고이월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행정국은 동 사업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순천시장의 요청('22.9.13.)에 따라 '22.11월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회계마감 일정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데 시간적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3년 1~4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3.4.25. 준공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공사계약 3천 2백만원은 지출원인행위 완료, 관급자재비 등 1억 4천 2백만원은 원인행위 미필

< 2022 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B)	지출계획 현 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 월 액 (E)	집 행 잔 액 (F=C-D-E)
	당 초	수 정 (A)					
계	4,137	5,289	0	5,289	5,153	174	△38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680	2,490	0	2,490	1,612	174	704
예 치 금	1,454	2,796	0	2,796	3,540	0	△744
기 본 경 비	3	3	0	3	1	0	2

라. 사업별 집행 현황

- 국내협력계정사업 10개 사업(24억 9천만원) 예산 중 16억 1천 2백만원이 집행되면서, 전체 집행률이 64.7%로 부진한 상황임.

< 2022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편성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계	2,490	1,612	64.7	
서울-타시도간 버스자유여행 상품 개발운영 (관광산업과)	150	140	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와 공동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5개 광역시, 5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지자체 : 경기(가평군, 파주시, 포천시),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논산시, 예산군 - 용역 입찰공고 및 대행사 선정(5~7월) - 스토리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9~12월) - 서울-지방간 스토리 여행상품 운영(9~12월)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 (청소년정책과)	200	2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계획 수립(2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공고 및 10개 보조사업자 선정(3월) - 운영단체 협약체결 및 교육 시행(5월) -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사업 추진(6~12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대외협력과)	1,000	40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 재해·재난 구호지원 상시 모니터링 및 검토(예비비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2022년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3.)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물품 및 구호금 지원 400백만원 ▶ (2021.7.)남부지역 집중호우 피해지역 물품 및 구호금 지원 400백만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대외협력과) ※ '23년 미편성	100	61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언론을 활용한 상생사업 홍보(언론광고+기획기사·인터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지역매체 광고 시행(3~4월) - '서울페스타 2022', '타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지역매체 광고 시행(7~9월)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 농수산물 서울장터, 농부의 시장과 기능 중복으로 예산 일부(200백만원) 감액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과)	10	1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서울정책연수 및 찾아가는 정책연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정책연수 지자체 참여 수요 조사(1~2월) - 민선8기 이후 변화된 시정핵심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로 예산 일부(190백만원)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10~12월) - 서울 정책연수(파주시, 제주도), 찾아가는 정책연수(파주시) 추진
식생활교육 현장 체험 교실 운영 (식품정책과) ※ '23년 미편성	10	9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 - 도농상생 및 서울시민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한 농촌에서 배우는 식생활 현장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 서울거주 초등학교생 및 부모 대상 108가족, 224명 교육 실시(10~11월)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 (관광정책과)	150	15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계획 수립(2.23) ◦ 타 시도와 MICE 공동마케팅 업무협약 체결(10.5.) - 업무협약 체결 지자체 확대 (기존 7개 → 확대 8개) ▶ (기존)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광주, 경남, → (신규) 인천 ◦ PLUS CITIES 지원프로그램 운영 - 파트너 지자체 연계 방문 MICE단체 개최지원금 지원 ▶ 총 8건, 496명 (992백만원) ※ 경기도 3건, 133명 / 강원도 5건, 363명 ◦ PLUS CITIES 통합 팸투어 개최 : 총 2회 - 해외 바이어·미디어 초청 팸투어 총 2회 개최 (9월3주·9월4주) - 아태지역 MICE 바이어 및 미디어 총 15명 (바이어 12명, 미디어 3명) - 파트너지자체 6개 참가 (서울, 경기, 강원, 전북, 광주, 경남) ◦ PLUS CITIES 공동 유치 홍보마케팅 : 총 21건
대학생 지역상생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사업 (관광정책과)	70	69	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투어 및 개인별·팀별 미션(지역관광자원 취재, 콘텐츠 제작) 수행 - 팸투어 사업참여 지자체 모집 및 선정(3월) ▶ 참여 지자체(12): 평창군, 영광군, 순천시, 완주군, 수원시, 안동시, 상주시, 고령군, 남해군, 부여군, 대전시, 괴산군 - 사업 운영대행 용역업체 선정(4.22일) - 대학생 지역관광 홍보단 40명 모집·선발(6.1.)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5.27일) ◦ 대학생 지역관광 홍보단 활동지원(6~11월) ◦ 성과공유회 및 해단식 (12.9)
랜선 나눔 캠퍼스 (대외협력과)	600	561	9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선 나눔 캠퍼스 참여자 모집(2~5월) - 대학생 11개 대학, 200명, 중학생 96개 지자체, 536명 참여 ◦ 대학생 멘토 오리엔테이션 실시(5.17.) - 사업소개, 활동매뉴얼, 1기 활동멘토 노하우 공유 등 ◦ 랜선나눔캠퍼스 멘토링 수업 운영(5월말~11월) ◦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 및 우수멘토 시상: 12월(5명)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조경과) ※ 사고이월	200	21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협력기금 신청 및 확보(11.16. ~ 11.29.) ◦ 순천만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추진계획 수립(11.29.) ◦ 실시설계용역 시행(12.5.~12.19.) ◦ 공사 계약 체결(12.26.) ◦ 공사 시행 및 준공(2023.1~4월) ◦ 준공 완료(2023.4.14.)

< 지출계획현액 대비 불용률 20% 이상 세부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명	지출계획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E=D/A)	불용사유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	1,000	400	0	600	60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 재해재난 발생시 복구비 지원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100	61	0	39	39	일반회계 내 타 사업과의 중복으로 지역상생박람회 사업 종료, 태풍으로 인한 추석 서울장터 취소 등에 따른 지역상생 홍보 예산 일부 불용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10	1	0	9	90	대행사 선정에서 직접 추진 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사업은 일반회계 내 타 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불용률(39%)이 높은 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당초 편성된 2억원이 1천만원으로
감액되고, 대부분 불용된 바,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10억원)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에
구호품 등을 지원하였으나, 집행액이 4억원에 그치고 있는 바, 재해재난을
당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임을 감안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결국 불용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을 3차에 걸쳐 지출계획 변경을
했음에도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비 10억 6천 8백만원 지출
감소, 예치금은 당초 계획대비 20억 8천 6백만원이 초과 지출된 바,

지출계획 수립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비용자성 사업비	2,680	2,490	1,612	△1,068	타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일부 사업비 불용 및 사고이월(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기본 경비	3	3	1	△2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회의 진행
예치금	1,454	2,796	3,540	2,086	20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및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일부 사업비 불용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동 기금은 3차(1차: '22.6.21, 2차: '22.11.4, 3차: '22.11.25.)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 특히, 3차 변경은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비(2억원)를 신규 편성하여 지출하였음.
-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되며, 일반회계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지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집행기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간 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특히, 의회 예산안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에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변경일자	변경내역	변경사유
2022.6.21. (1차)	《수입측면 : 1,152백만원 증액》 - 예치금 회수 : 3,077백만원 → 4,223백만원 (증 1,146백만원) - 기타수입 : 0백만원 → 6백만원 (증 6백만원)	《수입측면》 - '21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증액
	《지출측면 : 1,152백만원 증액》 - 예치금 : 1,454백만원 → 2,606백만원 (증 1,152백만원)	《지출측면》 - '21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22년 수입계획이 1,152백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예치금 보정
2022.11.4. (2차)	《수입측면 : 변동없음》	《수입측면》 - 해당사항 없음
	《지출측면 : 변동없음》 - 비용자성사업비 : 2,680백만원 → 2,290백만원(감 390백만원) - 예치금 : 2,606백만원 → 2,996백만원 (증 390백만원)	《지출측면》 - 일반회계 내 타 사업과의 중복 및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 예산 감액 조정
2022.11.25. (3차)	《수입측면 : 변동없음》	《수입측면》 - 해당사항 없음
	《지출측면 : 변동없음》 - 비용자성사업비 : 2,290백만원 → 2,490백만원(증 200백만원) - 예치금 : 2,996백만원 → 2,796백만원 (감 200백만원)	《지출측면》 - '순천만 국가정원 내 서울정원 재조성' 사업비 신규 편성

남북교류협력기금

가. 기금 조성 및 운용 총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통해 남북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4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기금지원 타당성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21년 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은 316억 9천 9백만원이며, 2022년 중 조성액은 12억 7천 1백만원, 사용액은 9억 7천 7백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은 319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천 3백만원 증가함.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A)+(B)
	계(B) = (C)-(D)	조성액(C)	사용액(D)	
31,699	293	1,271	977	31,992

- 2022년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328억 7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329억 7천만원임.

< 기금 운용 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A)	수입액(B)	지출액(C)	다음연도 이월액(D)	비고
95	32,875	32,970	-	A+B=C+D

- 동 기금의 설치 목적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 바, 이러한 목적에 맞게 기금 운용이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나. 기금 수입결산

-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316억 4백만원, 기금운용수익(이자수입) 8억 6천 7백만원 등 총 32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5)에 따른 기금 조성재원과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22 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수입계획 현액 (C=A+B)	징수 결정액 (D)	실제 수납액 (E)	수납률 (E / C)
	당초	수정 (A)					
계	22,277	32,044	95	32,139	32,970	32,970	102.6
예치금회수	22,004	31,604	-	31,604	31,604	31,604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	-	95	95	95	95	100
이자수입	273	440	-	440	867	867	197
보조금반환수입	-	-	-	-	163	163	-
기타수입	-	-	-	-	241	241	-

- 다만, 보조금반환수입(1억 6천 3백만원) 및 기타수입(2억 4천 1백만원)이 수입계획 없이 수납되었음.

5)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기타수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액으로, 행정국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할 것을 가정하였으므로 수입 계획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기금 수입계획 작성시,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는 바, 수입계획 없이 수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금운용계획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기금 지출결산

○ 기금 지출결산의 경우, 비용자성사업비 9억 2천 9백만원, 예치금 319억 9천 2백만원을 포함한 총 329억 7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 비용자성사업비는 평화·통일 교육사업, 남북 청년 평화통일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지원사업 등에 지출된 것으로,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4조 각호의 기금 사용 용도에⁶⁾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다.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2022 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초	수정 (A)					
계	22,277	32,044	95	32,139	32,970	-	-831
비용자성 사업비	6,305	6,305	95	6,400	929	-	5,471
예치금	15,872	25,639	-	25,639	31,992	-	-6,353
기본경비	100	100	-	100	49	-	51

○ 또한, 최근 3년간 기금 사업의 평균 집행률(2020년 46.9%→2021년 33.2%→2022년 14.5%)은 35.7%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단위 : 백만원, %)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15,000	7,043	46.9%	12,956	4,305	33.2%	6,400	929	14.5%

○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현실적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평화 안보회의(10억 5천만원), ▶평화통일 사회적대화(3억 5천만원), ▶북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협력(10억원),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10억원) 등 14개의 사업들이 미추진 되었음.

< 2022년도 기금 미추진 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최종계획	집행액
계		5,140	-
통일 기반 조성	남북 이산가족 상봉교류 지원, 남북 이산가족·인권 등 문제해결 지원	450	-
	서울평화안보회의	1,050	-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350	-
	평화·통일 가족캠프	110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경험기업 경영 실태 조사지원	50	-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북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협력	1,000	-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 등 영양개선	1,000	-
	남북 산림협력 사업	200	-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사·문화·체육·등 교류	300	-
	서울-평양 간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100	-
	북한 취약계층 식수위생 개선	400	-
	한반도 기후변화 위기 공동대응 사업	100	-
기타 사업비	국외업무여비	15	-
	민간인 국외여비	15	-

- 기금사업은 남북관계 국면에 따라 정상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외교적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업개발에 적극 나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 체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국외여비(3천만원)가 전액 불용되었는 바, 연례적·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사업별 집행 현황

- ‘평화·통일교육사업’은 단체 선정 개수 축소(2021년 35개→2022년 8개)로 집행률이 52%에 불과한 바, 전례답습적인 사업계획으로 당초 지출계획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와 집행잔액 과다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 재검토를 통해 역량있는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 아이디어 발굴·육성 지원’ 사업도 집행률 50.0%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고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실효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등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 계	1,302	929	71.4	
평화·통일 교육사업	425	221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 평화·통일 교육 전문강사 및 해설자 양성, 현장답사 등 체험교육, 기타 민간차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육 선정 및 지원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률	추진실적
지역밀착형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사업	500	431	8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지역밀착형 자치구 교육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3월~11월 - 자치구의 평화·통일의 상징적 공간을 활용한 체험교육, 상호간 문화이해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의식 함양 교육 선정 및 지원
남북 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발굴·육성 지원	200	1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청년 평화통일 창업아이디어 오픈랩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6월~11월 - 평화통일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픈랩(공개오디션), 창업 인큐베이팅 및 연계 프로그램, 최종발표회 등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 지원	95	95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통일 MZ세대 통일문화 선도사업(이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2월~22.5.31.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청년 모임 진행(스토리 발굴 등) ▶ 뉴미디어 콘텐츠 웹툰 및 유튜브 제작 진행 등
통일교육주간 연계 서울락스퍼 국제영화제	70	7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주간연계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5.24. ~5.29. - 장소 : CGV 피카디리, 서울광장 - 평화 및 북한 관련 영화상영, 통일 세미나 및 북한사진전 등 부대행사 개최 등
기타 (지방보조사업 정산용역 등)	10	1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사업 정산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사업 5건(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사업,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서울시 평화통일 시니어양성 사업, 한반도 평화통일 온라인박람회, 평양탐구 학교)에 대한 정산용역 추진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 의제선정위원회	2	2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 의제선정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국제도시 평화안보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선정위원회 위원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미추진(전액 불용) 사업 목록은 별도

○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금편성에 있어 사업설계와 수요예측이 부실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정밀하고 엄격한 사업 설계를 통해 기금의 실제 수요에 맞춰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사정변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예치금 지출계획을 당초 158억 7천 2백만원에서 256억 3천 9백만원으로 의회 심의를 통해 변경(97억 6천 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비 161억 2천만원이 초과 지출되었는 바, 지출계획 수립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이고 정교한 추계를 위한 행정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당초계획 대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운 용 계 획		지 출 액 (B)	증 감 액 (B - A)	증 감 사 유
	당 초 (A)	수 정			
비용자성 사업비	6,305	6,305	929	-5,376	코로나19 및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 일부 미추진
기본 경비	100	100	49	-51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회의 감소 등
예치금	15,872	25,639	31,992	16,120	계획 대비 지출액 감소 및 이자액 증가로 인한 예치금 증가

마. 기금운용계획 변경

- 동 기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회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지출계획상 예치금을 97억 6천 7백만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였음.

<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

〈수입 계획〉				〈지출 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22,277	32,044	9,767	계	22,277	32,044	9,767
예치금수회	22,004	31,604	9,600	비용자성사업비	6,305	6,305	-
이자수입	273	440	167	기본경비	100	100	-
				예치금	15,872	25,639	9,767

- 다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예산에 비해 집행과정의 탄력성이 보장되지만,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정확한 수입·지출 추계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관련

- 2018년부터 지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2023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음.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023 6 9 공개일 현재 기준)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부적정	통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한 기금 편성·운용 방안 마련	진행 중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부적정	권고	「남북교류협력조례」 등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자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자금심의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진행 중
3	남북교류협력사업 적정 여부 등 심의·검토 소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낭비	주의요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기금으로 추진 시 기금 목적 부합 여부, 사업내용 적정 여부 등을 남북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여 기금이 적장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철지	진행 중
4	2019년 동북아 국제친선 탁구대회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요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협약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지	진행 중
5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 소홀	주의요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약정서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지	진행 중
6	2020년 윤이상 서울평화음악제 사업 부적정	주의요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지	진행 중
7	기준 없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선정 추진 부적정	주의요구	남북교류협력기금(보조금)으로 예외적으로 공모 절차 없이 보조사업을 선정·추진하는 경우 관련 규정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 선정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지도·감독 업무 철지	진행 중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8	포럼 및 남북정상회담 기념행사 보조금 관리 소홀	주의요구	市-보조사업자 간 약정-보조금 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서울특별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市-보조사업자 간 체결한 약정 등 위반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지	진행 중
9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등 인건비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진행 중
10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보조금 관련 허위 장산서류 제출	시정요구	허위실적 제출로 확인된 강사비 8,460,000원을 교부취소 및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	진행 중
11		통보	허위 장산서류 제출한 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舊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등 적절한 조치 검토	진행 중
12	2021년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과정 및 장산 부적정	주의요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협약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지	진행 중
13	남북교류협력 자료집 용역 미이행에 대한 준공금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진행 중
14	남북경협전람 제작 및 배포 용역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 시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	진행 중
15	4·27 1주년 기념 관문점 디오라마 전시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요구	향후 계약업무 추진 시 「행정 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 실무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 적절한 조치	진행 중

- 출처: 감사위원회 보고서 발취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은 26%에 불과한 반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반사업이 74%에 달하고, 이 중 5개 단체가 전체의 52.5%를 지원받아 일부 특정단체에 지원이 집중되었으며, 그 밖에 보조금 회계 및 정산처리, 수의계약 등의 부적정 처리 건으로 나타남.

[지적사항 총괄]

(다의·거·처·위·며)

총건수	합 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정 (환수)	감 액	기 타 (시정)						
15	-	8,460 등 산정 필요	- (0)	- (0)	1 (8,460 등 산정 필요)	1 (8,460 등 산정 필요)	-	-	11 (0)	-	1	2	- (0)	- (0)

[표 2] 2018~2022년 남북기금 통계목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2022.12.31. 기준)

예산구분(통계목)	집행액	총사업비 대비 비중	보조금 대비 비중	민간경상보조 대비 비중
계	23,253	100%		
보조금	16,027	69%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13,861	60%	86%	100%
일반사업	10,211	44%		74%
공모사업	3,650	16%		26%
자치단체경상보조	2,166	9%	14%	
사무관리비	3,751	16%		
국외경상이전	1,524	7%		
행사운영비	1,026	4%		
기타	925	4%		

[표 3] 2018년~2022년 남북기금 일반사업 집행 현황(상위 5개 단체)

(단위: 백만 원, %)

순위	지원단체명	집행액	비고
	계	5,357	52.5%
1	B	1,887	18.5%
2	C	1,230	12.1%
3	D	1,037	10.2%
4	E	694	6.8%
5	F	509	5.0%

- 출처: 감사위원회 보고서 발취

- 이에, 행정국은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실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기금이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시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협약서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이태기
------	-----	-------	-----